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08 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정동영

소병훈 • 박지원 • 양부남

김문수 · 김현정 · 이성윤

강유정 · 조승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.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,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

「상법」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「상법」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.

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,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이 아닙니다.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 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.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.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.

이에,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

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.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"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" 를 각각 "합자회사·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대상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4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 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②		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합명회사· <u>합자회사 및 유한</u>	4 <u>합자회사·유한</u>		
<u>회사의</u> 출자지분	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		
5. ·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	3		
의 종류별 가액(價額)의 산정방			
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			
다.	.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합명회사 · <u>합자회사 및 유한</u>	8 <u>합자회사·유한</u>		
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	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		
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			
도의 회사 연간매출액			
9. ~ 15. (생 략)	9. ~ 15. (현행과 같음)	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		